

연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정 2020.02.05.

개정 2021.09.01.

시행 2021.09.01.

개정 2022.02.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책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연세대학교의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휴학생 및 수료생도 포함한다) 중 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제2조 1호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한다.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 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
3. "전산시스템"이란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하며, 이후 통합연구정보시스템으로 지칭한다.
4.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5.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6. "연구기관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학과 또는 교실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신촌캠퍼스, 미래캠퍼스 및 의료원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가진 기관의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제2조 제14호, 제91조 제8항 참고

제2장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제4조(통합관리 대상 인건비)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2조 2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제1항의 인건비를 제외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 설정) ①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며, 해당 계정에서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정은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 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된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학생인건비는 제5조의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관리계정의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한다.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계좌이체결과 등의 증명자료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 방법은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7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전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잔액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2.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변경된 기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
3.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전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동일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의 잔액을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4. 연구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일부를 원래 소속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변경하여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변경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5.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관 후 남은 사용 잔액은 제5조 2항에 따른 연구기관계정 등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②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의 학생인건비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8조(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사과정 : 월 1,2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② 휴학생의 경우 각 호를 계상기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기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9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계정책임자는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자의 참여율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학생연구자의 참여율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율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⑤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통합연구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 ⑥ 계정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제2조 제1항에 따라 책정한 제8조의 계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자(재학중인 학생에 한함)을 대상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단위 결정에 따라 학사과정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학생인건비의 기관계정의 금액 중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용도의 경우에는 학기의 시작과 함께 해당 용도의 학기별 총액을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매월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균등지급 금액은 학위과정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계정 단위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를 균등지급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받을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통합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1조(통합연구정보시스템 구축) 학생인건비 통합계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2.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3.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5. 학생연구자 지급 계좌 관리 및 지급정보 제공
6. 학생연구자의 지급 총액관리
7.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관리
8. 시스템 연동

제12조(통합연구정보시스템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연구정보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1조의 항목을 기준으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자체점검

제13조(운영현황 자체점검) ①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의 연구 및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부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자체점검은 연1회 이상 감사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며,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점검 추가실시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은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보장

제14조(연구참여확약서 준수) 학생연구자의 연구 및 학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며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및 교육 실시) 학생연구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성실의무 수행)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업무와 역할을 서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요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인건비유용 방지

제18조(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이하 “학생인건비 유용”이라 한다)하여서는 안되며,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학생인건비 수령계좌는 학생연구자가 직접 등록
2.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수령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제공
3. 연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건비 유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4. 연구책임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징수
5. 학생인건비 유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6. 학생인건비 유용 등 부정행위 설문조사 실시
7.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제20조(학생인건비 집행 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 ① 학생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연구비 집행 부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② 연구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 감사 부서에서 파악하여 산학협력단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내 윤리인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1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산

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http://humanrights.yonsei.ac.kr>), 연구윤리(<http://yure.yonsei.ac.kr>), 산학협력단 인사팀(감사)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0)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연세대학교에 신속하게 요구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적용 시점) 제8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학과	과정 및 학기	() 과정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및 지급액/지급률

참여기간	구분	연구책임자계정 지급정보
	지급액(월)	원
	지급률(월)*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학부 120만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

※ 월 별 인건비 지급액이 다를 경우 셀을 추가하여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나. 담당업무(역할) : 연구보조(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라.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마.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 (학과명)	학과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학생연구자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연세대 학교는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학번, 이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계좌번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	학생인건비가 지급된 일의 다음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	학번, 이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계좌번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학생인건비가 지급된 일의 다음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